2024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4

국민권익위원회

Contents

Part I 부패영향평가 제도 총설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 6
2. 부패영향평가 기준 ····· 8
3. 부패영향평가 업무 처리 절차 ····· 11
4. 2024년도 부패영향평가 현황 ····· 15

Part II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1. 평가기준별 사례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 32
1. 수도법 시행령 ····· 34
2.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 36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39
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1
2.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 45
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8
4. 국악진흥업 시행령 ····· 53

(3) 특혜발생 가능성 ····· 56
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8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1

Part Ⅱ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63
1. 출입국관리법 ····· 66
2.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9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2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74
1.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77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9
3.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 81

(3) 재정누수 가능성 ····· 83
1. 군 장려금 지급규칙 ····· 85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 88
1. 어선법 ····· 90

(2) 공개성 ····· 92
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 94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3.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 99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1

(3) 예측 가능성 ····· 10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5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8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114
5.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117

Contents

Part Ⅱ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 119
1.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1
2.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9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132
1. 출입국관리법 ····· 133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 137
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 139
2. 도서관법 시행령 ····· 142

Part Ⅲ 참고자료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 146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 155
3.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 170
   2)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 173

Part

I

부패영향평가 제도 총설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2. 부패영향평가 기준
3. 부패영향평가 업무 처리 절차
4. 2024년도 부패영향평가 현황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부패영향평가 의의

-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될 경우 이를 사전에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부패방지시스템

부패영향평가 목적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법제도에 있어서 부패발생에 취약한 분야의 본질적인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필요성

-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 필요

  ⋙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 4. 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자료요청, 평가결과의 통보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장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제6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부패영향평가 기준 (영 제30조제1항)

- 평가 기준은 크게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
  - '준수'는 행정의 수요자(민원인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및 '특혜발생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집행'은 해당규정이 행정의 공급자(처분권자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행정절차'는 해당 규정이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해 부패발생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부패통제'는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등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부패통제장치 및 부패방지 법령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며,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 침해,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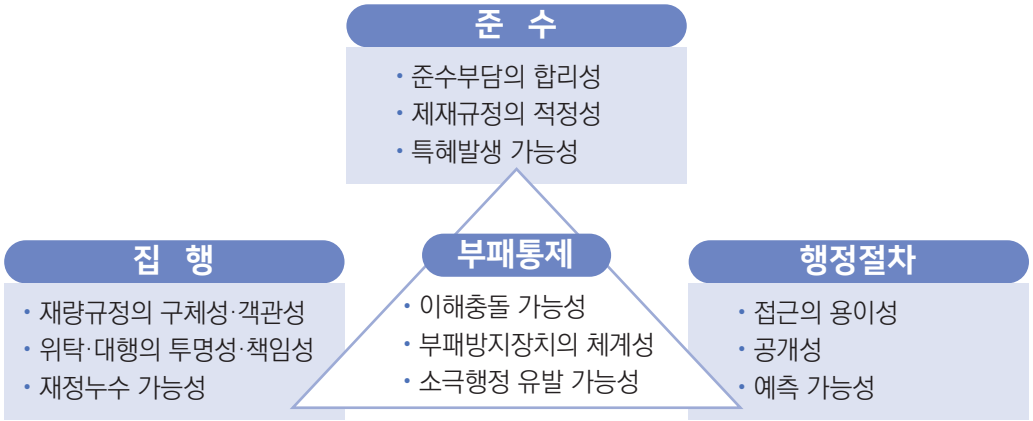

준 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 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 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 수렴에 있어 이해 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통제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 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 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3 부패영향평가업무 처리 절차

1. 부패영향평가 요청

1)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 요청

※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
⇒ 직제,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관리 관련 법령
⇒ 평가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추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 참고 :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3조의2

2) 평가요청 시 제출할 자료

구분	제출할 자료	비고
일부개정 법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문별 개정이유서 •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요청 시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공청회 자료, 연구 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제정·전부개정 법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요청 시 공청회 자료, 연구 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 행정기관의 법령입안 주무부서는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제출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2.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1) 평가기간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실시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

    ※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2) 평가방법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평가단계에서 해당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또는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관기관에 통보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으로 세분하여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하여 각 업무에 활용토록 할 수 있음

3) 평가결과의 처리

-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침

-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 이행상황을 확인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 등

-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차관·국무회의 시 첨부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시 관련 의견 제출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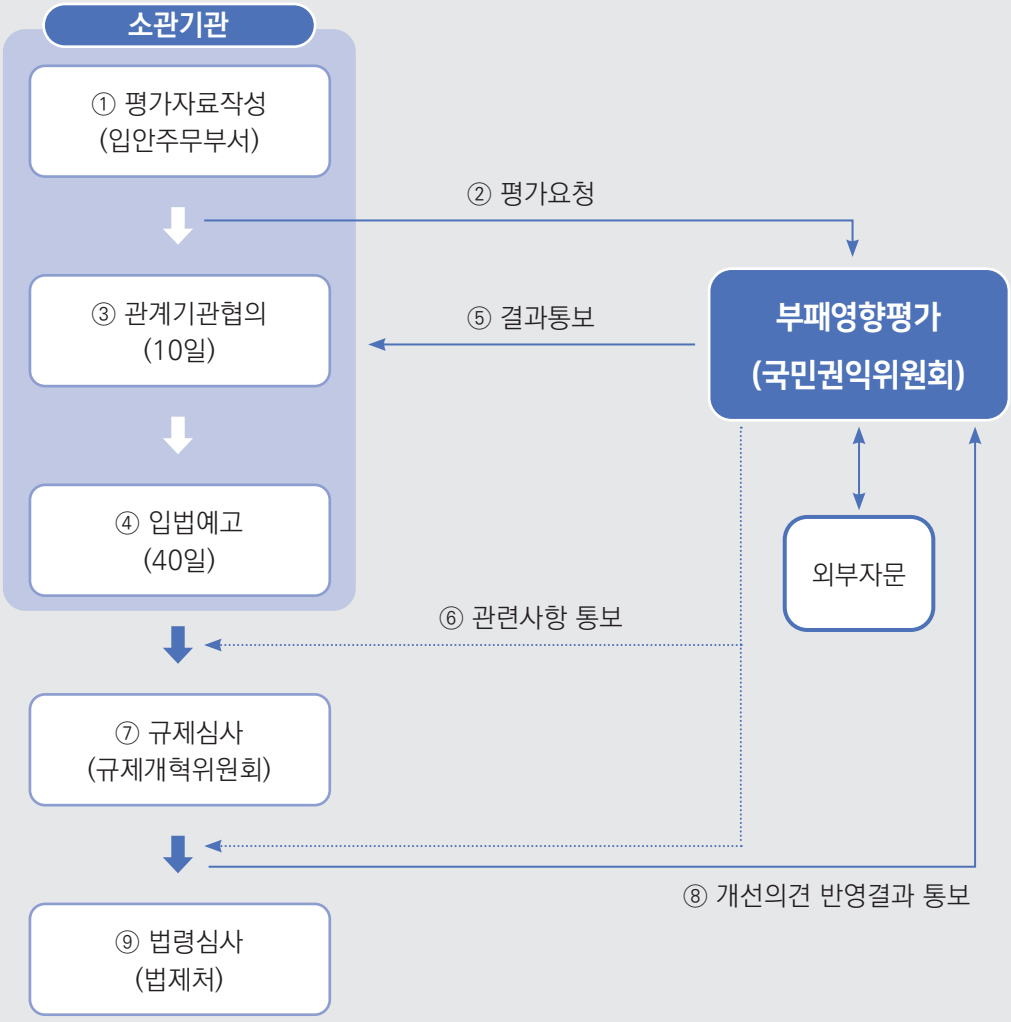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4 2024년도 부패영향평가 현황

1. 주요성과

▸ 신속평가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

- 1,833개의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하여 272건의 개선권고 실시

※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46개 중앙행정기관의 1,833개 법령을 평가하여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권고사항을 발굴(권고율 14.8%)

처리법령 및 개선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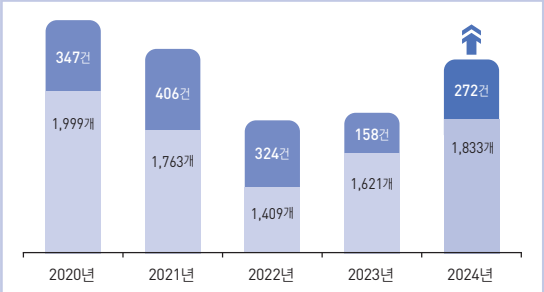

권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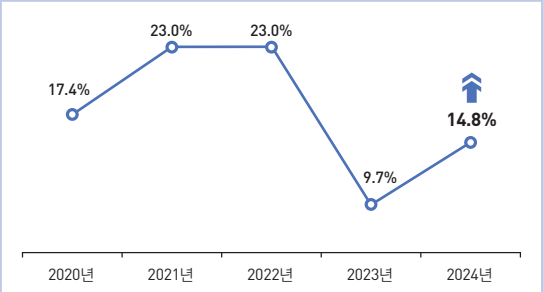

- 평가법령에 대한 전체 처리기간은 3.8일로 소요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

※ 원안동의 법령 처리기간은 3.1일, 개선권고 법령은 12.2일로 전년대비 3.7일 단축, '06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신속하게 평가를 완료

전체 처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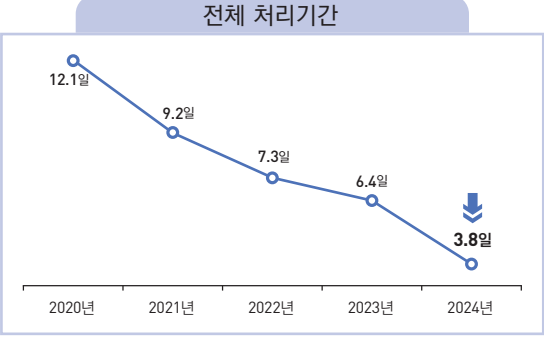

권고 처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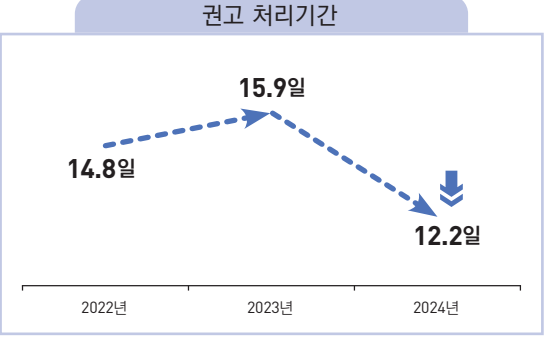

▸ 적극권고 법령별·분야별 정밀 정비로 부패발생요인을 적극 발굴·차단

- 개선권고율은 14.8%로 큰 폭으로 증가(9.7% → 14.8%)
- (법령별) 개선법령은 대통령령이 56.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
- (분야별) 법령분야 중 산업·개발(35.8%)의 권고가 가장 두드러지며, 환경·보건(23.0%), 교육·문화(13.5%) 순으로 권고 추진
- (기준별)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에 따른 권고(39.3%, 107건)가 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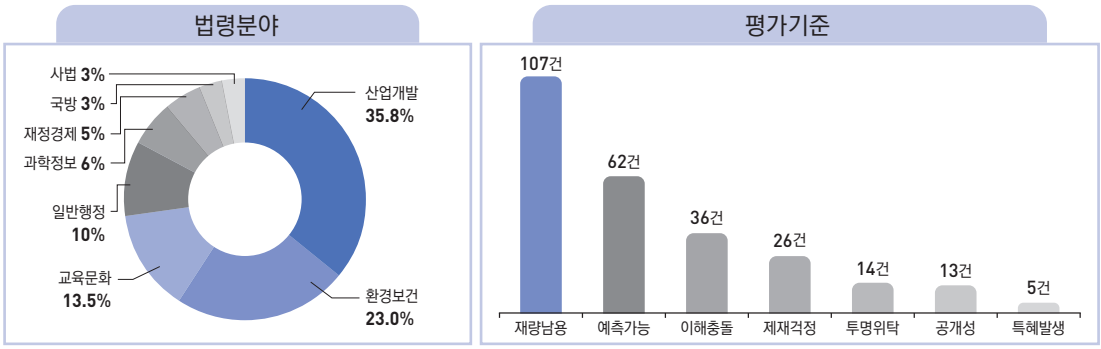

※ 법령유형과 분야는 권고법령수(148개)를, 평가기준은 권고건수(272건)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1개의 법령안에 다수 권고 시 평가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주요사례 경제·민생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부패유발요인 적극 발굴

-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의 기준(연령 및 소득, 근로·활동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
-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고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근거 등 이해충돌방지체계를 강화해 경찰공무원 채용·비위 심의의 공정성 제고
- 전기차 배터리 등 자동차 핵심장치등의 안정성 인증 표시 부착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증표시 업무의 혼선 최소화 및 대국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2. 세부 추진현황

▸ 제·개정 법령안 접수(건)

- ’24년 한 해 동안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46개 행정기관의 1,816개 제·개정 법령안이 접수되어 전년(1,594개) 대비 13.9% 증가

제·개정법령 접수현황

(단위 : 개, %)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행정규칙
전체누적 (’06. 4. ~ ’23.)	29,188(100)	4,779(16.4)	13,420(46.0)	10,849(37.1)	140(0.5)
’20년	1,965(100)	333(16.9)	904(46.0)	722(36.8)	6(0.3)
’21년	1,754(100)	134(7.6)	916(52.2)	704(40.2)	-
’22년	1,449(100)	134(9.3)	716(49.4)	597(41.2)	2(0.1)
’23년	1,594(100)	146(9.2)	837(52.5)	609(38.2)	2(0.1)
’24년	1,816(100)	213(11.7)	906(49.9)	697(39.4)	-

▸ 제·개정 법령안 처리(건)

- 1,833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전년(1,621개) 대비 13.1% 증가
  - 22대 국회 개원 및 정부조직 개편(국가유산청(’24. 5.), 우주항공청(’24. 5.) 등) 등으로 법 제·개정 수요가 증가하였고 특히 제정법령이 큰 폭으로 상승

※ 제정법령 : ’23년 1,622개 법령안 중 66개 → ’24년 1,833개 중 136개로 2배 이상 증가

▎제·개정법령 처리현황 ▎

(단위 : 개, %)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행정규칙
전체누적 ('06. 4. ~ '24.)	29,167(100)	4,779(16.4)	13,415(46.0)	10,829(37.1)	144(0.5)
'20년	1,999(100)	336(16.8)	916(45.8)	740(37.0)	7(0.3)
'21년	1,763(100)	136(7.7)	920(52.2)	707(40.1)	-
'22년	1,409(100)	131(8.0)	701(50.3)	575(41.2)	2(0.1)
'23년	1,621(100)	143(8.8)	849(52.4)	627(38.7)	2(0.1)
'24년	1,833(100)	218(11.9)	913(49.8)	702(38.3)	-

- 「자연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912개, 49.8%)이 절반을 차지

○ 영향평가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3.8일로 '06년에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가장 신속하게 평가

- 처리건수가 전년 대비 13.1%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은 3.8일로 전년 대비 2.6일 큰 폭으로 단축

▎처리 기간 ▎

(단위 : 개, 일)

구분	전체 평가법령		개선법령		원안법령	
	법령수	처리기간	법령수	처리기간	법령수	처리기간
전체누적 ('06. 4. ~ '24.)	29,167	11.7	3,133	20.1	26,034	10.6
'20년	1,999	12.1	169	20.9	1,830	11.3
'21년	1,763	9.2	182	15.5	1,581	8.5
'22년	1,409	7.3	136	14.8	1,273	6.5
'23년	1,621	6.4	85	15.9	1,536	5.9
'24년	1,833	3.8	148	12.2	1,685	3.1

- 원안동의의 경우 3.1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빠른 제·개정을 지원
- 개선권고 역시 12.2일로 처리기간을 전년대비 3.7일 단축하여 각 부처 주요 법령의 제·개정을 신속·적기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개선권고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등 148개 제·개정 법령에 대해 272건의 개선을 권고

| 개선권고 현황 |

(단위 : 개, %)

구분	전체기간 ('06. 4. ~ '24)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증감 (전년대비)
평가법령	29,167	1,999	1,763	1,409	1,621	1,833	13.1 ↑
개선법령	3,133	169	182	136	85	148	74.1 ↑
개선권고	7,387	347	406	324	158	272	72.2 ↑
개선권고율	25.3	17.4	23.0	23.0	9.7	14.8	5.1%p ↑

- 개선권고율은 14.8%로 전년 대비 큰폭으로 증가(9.7% → 14.8%)
- 전부 개정을 포함한 제정안에 대한 개선권고가 46개 법령안에 대해 119건으로 전체 권고(272건)의 절반 가까이인 43.75%를 차지

○ 경제·민생 등 주요 분야별·부처별 전담직원 지정 등 접수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제·개정 지원

- 평가 수요증가에 대한 적극 대응 및 법환경 변화에 맞춘 권고 기준 지속 정비 등 개선권고의 품질·완성도는 제고하고 신속성은 높임

* (권고 기준 정비) 행정제재 가중·감경 기준 명확화 및 고시·공고 필요기준 마련, 기관별 장기지연·미이행 과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권고 기준 지속 개선추진

▸ 개선법령별 세부현황

① 법령 유형별

- 전체 개선법령 중 대통령령이 56.8%(84개)로 법률 위임사항이나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가장 큰 비율 차지

| 유형별 개선법령 |

(단위 : 개, %)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
전체누적 ('06. 4. ~ '24.)	3,133(100)	708(22.6)	1,587(50.7)	806(25.7)	32(1.0)
'20년	169(100)	23(13.6)	106(62.7)	40(23.7)	-
'21년	182(100)	18(9.9)	116(63.7)	48(26.4)	-
'22년	136(100)	5(10.6)	95(66.4)	35(21.2)	1(0.7)
'23년	85(100)	6(13.6)	56(62.7)	22(23.7)	1(0.2)
'24년	148(100)	11(7.4)	84(56.8)	53(35.8)	-

※ 전체 개선권고(272개) 중 대통령령에 대한 개선권고는 180개로 66.2%

② 법령 분야별

- 분야별로는 산업·개발이 35.8%(53개 법령, 89건 권고)으로 가장 많고, 환경·보건 23.0%(34개 법령, 68건 권고), 교육·문화 13.5%(20개 법령, 40건 권고) 순

- 산업·개발 분야는 해양수산부(18개 법령, 30건 권고), 국토교통부(13개 법령, 20건 권고), 농림축산식품부(10개 법령, 21건 권고) 등의 소관 법령으로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기업·혁신, 신기술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의 개선이 두드러짐

(산업·개발) 참고 사례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행정처분의 구체성·객관성을 강화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우수사업자 지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우수사업자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기차 배터리·구동축전지 등 자동차 핵심장치의 안정성인증 여부를 표시·부착할 위치를 명확하게 정하여 업무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보제공의 효과성을 제고

- 환경·보건 분야의 경우 보건복지부(14개 법령, 25건 권고), 환경부(11개 법령, 18건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4개 법령, 11개 권고) 등의 소관 법령으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감염병·질환의 예방 및 관리 또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안의 개선이 많았음

(환경·보건) 참고 사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의 특성 및 유형, 예후 등을 고시·공고하는 방법과 위치 등을 명시하여 의료행정의 공개성 제고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 연령 및 소득, 근로·활동능력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노인친화기업 지정·취소 등을 어디에 공고하는지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혼란 제거

법령분야별 개선법령

(단위 : 개, %)

구분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누적 ('06. 4. ~ '24.)	평가 법령	29,167	5,321	3,097	1,898	3,094	8,238	1,104	5,150	1,177	93
		(100)	(18.2)	(10.6)	(6.5)	(10.6)	(28.2)	(3.8)	(17.7)	(4.0)	(0.3)
	개선 법령	3,133	456	395	162	231	974	170	650	88	7
		(100)	(14.6)	(12.6)	(5.2)	(7.4)	(31.1)	(5.4)	(20.7)	(2.8)	(0.2)
'20년	평가 법령	1,999	324	177	127	208	663	63	322	114	1
		(100.0)	(16.2)	(8.9)	(6.4)	(10.4)	(33.2)	(3.2)	(16.1)	(5.7)	(0.1)
	개선 법령	169	34	17	14	11	53	4	24	12	0
		(100.0)	(20.1)	(10.1)	(8.3)	(6.5)	(31.4)	(2.4)	(14.2)	(7.1)	(0.0)
'21년	평가 법령	1,763	298	171	146	148	552	38	332	78	-
		(100)	(16.9)	(9.7)	(8.3)	(8.4)	(31.3)	(2.2)	(18.8)	(4.4)	-
	개선 법령	182	38	22	11	15	39	2	54	1	-
		(100)	(20.9)	(12.1)	(6.0)	(8.2)	(21.4)	(1.1)	(29.7)	(0.5)	-
'22년	평가 법령	1,409	238	122	88	155	429	57	245	75	-
		(100)	(16.9)	(8.7)	(6.2)	(11.0)	(30.5)	(4.0)	(17.4)	(5.3)	-
	개선 법령	136	27	21	5	19	31	14	14	5	-
		(100)	(19.9)	(15.4)	(3.7)	(13.9)	(22.8)	(10.3)	(10.3)	(3.7)	-
'23년	평가 법령	1,621	303	115	135	184	510	42	261	71	-
		(100)	(18.7)	(7.1)	(8.3)	(11.4)	(31.5)	(2.6)	(16.1)	(4.4)	-
	개선 법령	85	7	6	-	8	40	7	12	5	-
		(100)	(8.2)	(7.1)	-	(9.4)	(47.1)	(8.2)	(14.1)	(5.9)	-
'24년	평가 법령	1,833	312	157	129	176	607	67	313	72	-
		(100)	(17.1)	(8.6)	(7.0)	(9.6)	(33.1)	(3.7)	(17.1)	(3.9)	-
	개선 법령	148	14	20	5	8	53	9	34	5	-
		(100)	(9.5)	(13.5)	(3.4)	(5.4)	(35.8)	(6.1)	(23.0)	(3.4)	-

▸ 기관별 세부현황

- (평가의뢰)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의뢰 상위부처는 국토교통부(14.3%, 260개)였고, 다음으로 보건복지부(7.4%, 134개), 행정안전부(6.4%, 116개) 순으로 나타났음

- (개선법령) 해양수산부가 12.2%(18개)로 개선법령 수가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9.5%, 14개), 국토교통부(8.8%, 13개)가 그 뒤를 차지

  - 의뢰건 대비 권고율은 해수부(16.8%), 과기부(14.8%), 교육부(13.8%) 순

    ※ 권고건수(272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양수산부(11.0%, 30건)가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9.2%, 25건), 국가유산청(8.1%, 22건) 순임

기관별 현황

(단위 : 개, 건, %)

구분	의뢰 법령	평가법령			
		계	개선법령	개선권고	원안법령
계	**1,816**	**1,833**	**148**	**272**	**1,685**
국토교통부	260	261(100.0)	**13(5.0)**	**20**	248(95.0)
보건복지부	134	128(100.0)	14(10.9)	25	114(89.1)
행정안전부	116	118(100.0)	4(3.4)	9	114(96.6)
기획재정부	110	110(100.0)	4(3.6)	4	106(96.4)
환경부	108	108(100.0)	11(10.2)	18	97(89.8)
해양수산부	107	108(100.0)	**18(16.8)**	**30**	90(83.2)
산업통상자원부	77	77(100.0)	3(3.9)	4	74(96.1)
교육부	67	65(100.0)	9(13.8)	12	56(8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	61(100.0)	9(14.8)	14	52(85.2)
국방부	60	61(100.0)	5(8.2)	14	56(91.8)
기 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7개 기관)	717	736(100.0)	58(7.9)	122	678(92.1)

※ 부처 정렬은 제·개정법령 평가의뢰(접수)건수를 기준

▸ 평가기준별 세부현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기준에 따른 권고가 39.3%(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측가능성 22.8%(62건), 이해충돌가능성 13.2%(36건) 순

| 평가기준별 현황 |

(단위 : 건, %)

분야	평가기준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347(100)	406(100)	324(100)	158(100)	272(100)
준수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	3(0.7)	2(0.6)	4(2.5)	2(0.7)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18(5.2)	34(8.4)	16(5.0)	7(4.4)	26(9.6)
	③ 특혜발생 가능성	2(0.6)	2(0.5)	4(1.2)	6(3.8)	5(1.8)
집행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73(21.0)	78(19.2)	140(43.2)	60(38.0)	**107(39.3)**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4(4.0)	21(5.2)	11(3.4)	9(5.7)	14(5.1)
	⑥ 재정누수 가능성	-	2(0.5)	3(0.9)	1(0.6)	1(0.4)
행정절차	⑦ 접근의 용이성	21(6.1)	21(5.2)	3(0.9)	2(1.3)	3(1.1)
	⑧ 공개성	23(6.6)	24(5.9)	17(5.3)	8(5.1)	13(4.8)
	⑨ 예측가능성	89(25.6)	82(20.2)	63(19.5)	36(22.8)	**62(22.8)**
부패통제	⑩ 이해충돌가능성	102(29.4)	127(31.3)	55(17.0)	21(13.3)	**36(13.2)**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5(1.4)	6(1.5)	5(1.5)	4(2.5)	3(1.1)
	⑫ 소극행정유발 가능성	-	6(1.5)	5(1.5)	-	-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은 과징금·과태료 부과·감면이나, 영업정지·취소 등 침익적 처분 기준의 구체화, 지정·인증·평가 등과 관련한 재량의 기준이나 범위의 명확화 등을 주로 권고
  - 특히 기본권 제한(사례 ①)이나 불이익(사례 ②) 또는 의무 부과(사례 ③)하는 처분 등의 요건이나 판단기준이 모호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개선

참고 사례

사례 ①「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시 추가 요구할수 있는 조치 이행의 범위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청의 임의적 조건 추가 가능성 제거

사례 ②「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사유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감면 및 가중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시하여 행정청 자의적 해석·판단 방지

사례 ③「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항공종사자가 신고해야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태 저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청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신고 대상여부 결정가능성 차단

- 예측가능성은 위임·위탁규정의 구체성이나 공개방식 등을 명확하게 하여 공공·행정정보 접근성 제고 등에 관한 개선을 권고
  - 수요자 입장에서 준비서류나 조치사항을 명확히(사례 ①) 해 혼선을 차단하고, 처리절차나 결과 확인을 쉽게(사례 ②) 해 국민 편의·접근성 제고

참고 사례

사례 ①「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사유로 자격증 재발급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각각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인이 구비해야 할 조치사항 등의 모호성 제거

사례 ②「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중앙 및 지방손상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및 필수 정보의 공고위치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공고방식 개선

- 이해충돌가능성은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으로 전년과 유사한 권고 비중을 차지
  - 자문 또는 심의·의결 등 위원회의 기능 및 성격에 따라 내·외부 위원 구성, 위원의 전문성,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마련·보완토록 권고

참고 사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및 직무 관련 비위 이력 등이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기준 마련으로 위원회 구성·운영의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구성위원의 결정을 건축위원회 의결로 간주할 수 있도록 구성위원 선정 기준 및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 마련하여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3. 개선권고 주요 사례 [영역별]

▸ 신산업·신기술 지원

사 례 ①

법령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분야			산업개발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재량권 남용 소지 차단

사 례 ②

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소관부처	산림청					법령분야			산업개발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산림청장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량의 구체성·객관성 제고

▸ 공정 채용

사 례 ③

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소관부처	경찰청					법령분야			형사사법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내·외부위원의 비율을 고려하고 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근거 마련으로 위원회 구성·운영에 공정성 확보

사 례 ④

법령안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											
소관부처	교육부					법령분야			교육문화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추가합격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 임용의 투명성 제고

▸ 고용 안정

사 례 ⑤

법령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법령분야			일반행정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	✓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요건 등을 별표 또는 고시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정현황을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필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공개성 강화

사 례 ⑥

법령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정안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법령분야			환경보건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			

- 일자리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의 요건(연령 및 소득, 활동능력 등)을 명확히 하여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 노인친화기업 등의 지정·취소 현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

▸ 학교·교육

사 례 ⑦

법령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소관부처	교육부					법령분야			교육문화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요건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센터의 전문성 및 기초 역량 확보

사 례 ⑧

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소관부처	교육부					법령분야			교육문화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 다문화교육 정책연구, 지원사업의 운영 및 현장 지원업무 등에 대한 위탁기관의 요건을 구체적 마련하여 신청기관의 최소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으로 인한 특혜발생 가능성을 방지하여 위탁행정의 투명성 강화

▸ 복지·취약계층 지원

사 례 ⑨

법령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소관부처	교육부					법령분야			교육문화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위탁할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최소 요건을 마련하여 위탁행정의 재량권 남용 방지

사 례 ⑩

법령안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소관부처	교육부					법령분야			교육문화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어린이집 지정신청 시 제출하는 운영계획서 포함사항을 별지 1호서식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조치사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

▸ 의료·보건

사 례 ⑪

법령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법령분야			환경보건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특성 및 유형, 예후 등을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명확히 하여 일반국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사 례 ⑫

법령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법령분야			환경보건			
평가기준	준수 합리	제재 적정	특혜 발생	**재량 통제**	투명 위탁	재정 누수	접근 용이	공개 적정	**예측 가능**	이해 충돌	부패 방지 체계	소극 행정 유발
				✓					✓			

- 의료사고 피해자가 대불 청구심사 요청 시 첨부 서류 중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삭제하고
- 각 호의 문서와 원장이 요청하는 서류로 구분하여 대불 청구과정에서의 국민혼란을 최소화

Part

Ⅱ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1. 평가기준별 사례
1) 준수
2) 집행
3) 행정절차
4) 부패통제

1 평가기준별 사례

1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개 요

- 법령 등의 적용 대상 집단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

- 준수부담이 과도할 경우 법령 등의 적용 대상자가 뇌물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통해 그 부담을 면제 혹은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내용

- 준수부담의 법적근거 등 검토
  - 다수의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근거,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검토
  -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상 작위·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검토

-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근거·배경 등을 검토 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준수부담의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 준수부담의 합리화 방안 등 검토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 검토
  - 당해 부담이외에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준수부담의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사례 01 수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50조의2(저수조의 설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저수조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신고서에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저수조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예측가능성

현황

- 개정안은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 시기·사항, 수리 절차, 과태료 부과기준 등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관련 법령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① (생 략)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점

- 신고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법률상 근거 부재
  - 「수도법」 제33조에서는, 저수조 설치 시 별도의 수리 없이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동 개정안에서는, 저수조 설치 신고에 대한 수리 절차 등을 신설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수리 여부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령상의 신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가 부담해야 하는 희생이 비합리적이며, 신고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법률에 근거가 없는 저수조 설치신고에 대한 수리 관련 규정 삭제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신고 수리 관련 조문 삭제

사례 02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43조(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업체명, 제품명, 사용목적 및 성능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품의 정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리목록에 등재한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명칭
2.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제품설명서(사용목적, 성능 등 정보를 포함한다)
4. 해당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조합된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한 정보(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관련 법령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3조(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조·수입신고 등) ①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려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34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관리목록(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목적, 성능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분류·관리하는 목록을 말한다)에 등재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2024. 1. 23. 제정, 2025. 1. 24. 시행]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로 재입법예고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중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확인·조사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제점

- 정보공개 관련 법률과의 범위 불일치로 과도한 정보공개 우려
  - 법 제33조제2항은 '제품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령안은 '신고된 제품의 정보인 디지털의료기기의 명칭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
  - 법률에서 임의규정을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강행규정으로 규정하여 상위법과 상충·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과도하게 표출하여 부담이 유발될 수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정보공개 관련 '~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법률과의 공개범위 일치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28.] [총리령 제2025호, 2025. 2. 28., 제정]

제47조(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판매하려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업체명, 제품명, 사용목적 및 성능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품의 정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리목록에 등재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명칭
2.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제품설명서(사용목적, 성능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4. 해당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조합된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한 정보(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해당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정보로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개 요

- 제재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처벌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거나, 지나치게 미약하여 다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반행위를 범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는지 검토

-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규정이 실효성을 갖는가를 판단하고 제재의 정도가 부패방지에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를 범할 유인이 존재하는지 등을 평가

평가내용

- 제재규정 검토
  - 제·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관련 규정·내용을 검토

- 제재규정의 필요성 검토
  -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발생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
  - 다른 법령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법령의 제재수준이 어떠한지 검토

-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검토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정도 검토
  -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 데 적정한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 방법은 없는가?	

사례 0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드론사용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관련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4. 우수사업자의 제품, 서비스 등 이용자 불만사항 및 드론사고 예방·대응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② (생 략)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현황

- 개정안은 법의 위임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이 가능한 세부 사유를 정하는 것임

관련 법령 드론법

제16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드론법 시행규칙

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드론사용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것
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항공사업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나. 「항공사업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된 사실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낸 사실

문제점

- (처분의 정도) 행정처분의 기준이 구체성·명확성을 결여
  - 법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우수사업자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 개정안에는 행정처분의 사유만 정하고 있을 뿐 처분의 정도(언제 취소하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정지하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재

- (처분의 실효성) 해당 처분 후 기 제공된 우수사업자 표지의 반납 등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적 후속조치에 대한 규정 부재

- (처분의 사유)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한 재량의 일탈·남용 우려
  -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 개정안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정기준과 무관한 요건을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사유로 정하고 있어 행정청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임의적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되는바 재량의 일탈·남용 우려가 있고

- 또한 처분사유 중 일부를 '우수사업자의 제품, 서비스 등 이용자 불만사항 및 드론사고 예방·대응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로만 정하고 있고 적절한 조치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부재

-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인지,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정지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지정취소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청탁 등 부패 유발 요인이 존재

- 특히 지정취소 등과 같은 침익적 성격의 행정처분 근거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이 이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커 이에 대한 보완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세부기준을 당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에 필요한 최소한의 후속조치(예〉 우수사업자 표지 반납 등)를 당해 법령에 명시
-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사유를 삭제 또는 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세부 사유를 당해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위규정으로 위임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3. 27.] [국토교통부령 제1465호, 2025. 3. 27., 일부개정]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공인 인증 마크(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의 효력정지 기간이 끝나면 인증서등을 해당 드론사용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1호	지정 취소	지정 취소
나. 법 제1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2호	효력정지 3개월	

사례 02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지역별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2조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생 략)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의 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현황

- 제정령안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을 규정

관련 법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9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가중처분을 위한 적용시점의 불명확
  - 가중처분의 요건인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적용시점은 명확하고 시점이 유동적이지 않아야 하나, 관련 기준이 없어 가중여부 판단 시 혼돈 야기
- 위반차수 산정을 위한 회차 적용 기준 미비
  -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 내용을 차등 적용해야 함에도 적용 차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이 발생하고 피처분자의 예측가능성 저하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의 위반행위가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게 하여 과도한 재량권 남용 가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시행령에서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위법과 상충·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집행 담당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적발한 날”로 명확히 규정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적용차수 산정 기준 규정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을 명확히 규정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취소 사유에 대하여 감경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53호, 2024. 8. 27., 제정]

[별표]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1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생 략)

사례 0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 제4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52조)	법정 최고액	대부업 外	대부업			
				부과 대상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5,000	법인의 경우 5,000 법인이 아닌 자 2,500 (임직원 1,000)	법인	1,500	3,500	5,000
				법인이 아닌 자	500	1,750	2,500
나.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1항 제2호		법인의 경우 5,000 법인이 아닌 자 2,500 (임직원 1,000)	법인	1,500	3,500	5,000
				법인이 아닌 자	500	1,750	2,500
다. 법 제41조제9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 제3호		3,000	법인	1,000	2,000	3,000
				법인이 아닌 자	500	1,000	1,500

과태료의 부과의 일반기준(시행령 제46조 관련)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제정령안은 개인금융채권·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조정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관련 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5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1조제9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5.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경매를 신청한 자
2. 제8조제4항·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경매를 신청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한 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5.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5조에 따른 추심 위탁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추심의 착수에 관한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성명 또는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안

제46조(과태료) 법 제52조의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문제점

- 과태료 감경(면제) 및 가중사유의 구체성 미흡
  - 제정령안은 과태료 감경(면제) 및 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청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 또는 가중 등이 결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이 존재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가중에 대한 산정기준 부재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처분 시 위반차수를 누적하여 산정하는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지나치게 장기간 위반차수가 누적되는 등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정도가 과도해질 우려가 있음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도,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장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가중처분 제도를 규정할 때에는 위반횟수,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되어 있음

법령입안·심사기준(2024, 법제처)

제4장 벌칙 규정

8. 행정질서벌(과태료)

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방식 규정방식

위반 횟수별 과태료 가중처분 제도를 규정할 때에는 위반 횟수,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상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먼저, 위반 횟수는 3회 이상으로 규정하는 입법례가 많다. 다만, 가중 필요성이 높으면 위반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1년 또는 2년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반복 가능성이 높고, 가중 필요성이 높으면 3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비례의 원칙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장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지막으로, 가중처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처분 후에 행해진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및 해석례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가중처분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에 한정함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과태료 감경(면제) 및 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과태료 위반 횟수별 가중에 대한 산정기준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0. 17.] [대통령령 제34945호, 2024. 10. 16., 제정]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생 략)

사례 04 국악진흥업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경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직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행정처분 사유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조 제3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1조 제3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 제3항제4호	경고	경고	지정취소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제정안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

관련 법령 국악진흥법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② (생 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둘 이상의 처분이 동일한 영업정지일 경우 가중사유 부재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 각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일 경우가 규정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 정도가 유사 법령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중사유가 결정될 수 있는 등 과도한 재량에 따른 부패발생 요인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반행위에 대한 둘 이상의 처분이 업무정지일 경우 가중사유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국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26.] [대통령령 제34708호, 2024. 7. 16., 제정]

[별표]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 라. (생 략)

2. 개별기준 (생 략)

(3) 특혜발생 가능성

개 요

- 법령 등으로 인해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특혜를 획득·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가 발생되거나 용인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

평가내용

- 수익적 규정 검토
  - 법령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검토
  - 구체적인 수익 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 조항 검토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정 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 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검토

- 특혜 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 특혜 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 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사례 0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3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해당 국공유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또는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국유재산의 경우 :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2. 공유재산의 경우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나 분할납부

관련 법령 도심항공특별법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운용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제정령안은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등에게 국공유 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국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해당 국공유재산의 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였고,
- 국가가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등에게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도록 하였음

문제점

- 사용료 등 규정이 불분명하고, 특정기관이나 단체에 특혜 발생 가능성
  -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등을 국공유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여 하한은 있으나 상한이 없어 자의적인 업무처리와 재량권 남용 가능
- 납부기일 연기에 대한 자의적 해석 가능성
  - 시행령 제13조제6항제1호에서는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도록 하였는데 총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한 것인지, 납부기일이 1년씩 연장되는지 불명확하여 임의적 판단에 따른 부패행위 발생이 우려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등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삭제
- 납부기일 연기시 1년의 범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삭제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제16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사례 0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8조(관람료의 감면)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3.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로 한정한다)의 주민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예측가능성

현황

- 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관람료의 감면 대상에 대해 규정

관련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문제점

-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 및 법령 집행 우려 있음

- 제정안 제18조제1항의 제1~3호에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람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 제4호에서는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행정기관이 임의적으로 관람료 감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 제18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의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감면율의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관람료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감면율의 세부적인 기준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9. 1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8호, 2024. 9. 13., 제정]

제18조(관람료의 감면)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주민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개 요

- 행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행정청에 대한 재량권 부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추상적·다의적 법령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등 부패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재량권자,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

평가방법

-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 등의 적용 대상 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

◎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 재량으로 선택 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인·허가 여부, 취소·정지 여부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 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의 가중·경감) 등이 적정한지 검토
-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검토 결과 재량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수범자가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는지 검토

◎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 재량권 행사과정에 당사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절차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회의록, 공문 등)가 공개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 기준이 설정·공표 되어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사례 01 출입국관리법

평가대상 조문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 ③ (생 략)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여권 발급 등 강제퇴거에 필요한 조치 이행 및 주거의 제한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체류 사항에 대한 정기적 보고
2. 정기적인 출석
3.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 방법 및 연락처를 제공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의 이행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재량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개정안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원칙 18개월, 예외적으로 18개월 이내 연장)하고 보호기간이 상한에 도달하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도록 하며,

-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에 필요한 조치 등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한 것으로
  - 여권 발급 등 강제퇴거에 필요한 조치 이행 및 주거의 제한과
  - 체류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출석,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의 제공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의 이행을 세부 조건으로 규정함

문제점

- 추가 요구(조건)가 가능한 '조치의 이행'에 대한 구체성·명확성 결여
  - 개정안은 동 조항 본문에서 여권 발급 등 강제퇴거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 그 외 요건을 정한 각 호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의 일부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의 이행'라고만 정하고 있어 동어 반복 이외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부재
  - 본문의 조치 이행과 달리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의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
  - 행정청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추가 조건이 달리 결정되는 등 과도한 재량권 행사 소지가 있으며, 추가 조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부정청탁 등 부패 발생이 우려
  - 또한 보호해제에 붙인 조건 위반시 안 제63조의3제1항제3호[1]에 따라 재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등 침익적 처분의 사유가 되는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큼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추가로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당해 조문 또는 하위법령(부령, 고시 등) 등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1) **제63조의3(보호해제 된 사람의 재보호)**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해제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법령에 반하는 활동 또는 취업을 한 경우
3. 보호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794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른 국가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를 명백히 송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례 02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조(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31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준공조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의 계획 수립, 특구지정 및 개발사업·연계사업 등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세부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 안 제2조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업,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등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31조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 등에 공개해야 하는 사항에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준공조서 및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함

관련 법령 **도심융합특구법**

제2조(정의) 1. ~ 2. (생 략)

3.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이란 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 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8조제3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1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① (생 략)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특구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내용
3. 그 밖에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문제점

-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사항)'에 대한 자의적 해석 가능성
  -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사항)'에 대한 해석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고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저해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사항)'을 판단하는 재량행사의 통제장치 마련

-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관보 등에 공개해야 하는 관계 서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데 있어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개선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개발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의 지정, 기본·실시계획 승인 및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44호, 2024. 4. 23., 제정]

제2조(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시장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7.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8.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28조(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준공조서」
3. 그 밖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사례 0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44조의28(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제) ① 법 제34조의27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0호의17서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요건: 법 제16조의2제4항 및 이 규칙 제23조의7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
2. 인력요건: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1명 이상 갖출 것

② 환경부장관은 사육곰 보호시설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의18서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현황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사육곰 보호시설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관련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법률에서는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 개정안은 해당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 및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법률의 위임에 따른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 등의 하위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환경부령 제1149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4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7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 이 규칙 제23조의7 및 별표 5의2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인력: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② 법 제34조의27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17서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육곰 보호시설의 평면도 및 사진
2.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계획을 포함한 사육곰 보호시설 관리계획서
3. 사육곰 보호시설 명세서
4. 사육곰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8서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개 요

- 행정권한·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대행하는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지 평가

> ※ '위탁·대행'외'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의 경우도 포함하여 평가
> 지정 규정 중에는 행정업무의 일부를 위임이나 위탁이 아니라 일정한 기관을 지정한 후 그 지정 기관이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정은 행정청의 업무를 민간기관이 수행하게 되므로 민간위탁이나 대행과 유사하여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평가기준으로 평가 필요

-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절차·운영방식이 투명한지, 관리·감독 수단이 합리적인지,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이 있는지 등 평가

평가방법

- 위탁·대행의 법적근거, 요건 등 검토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근거,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위탁사무의 내용이 위탁의 대상으로 적정한지 검토
  - 수탁기관이 재위탁할 경우 원 위탁기관의 승인절차나 재위탁 사실 공개 등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 위탁·대행의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기관의 선정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규정을 공개하고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탁·대행 기관에 대한 평가규정 등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제재수단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업무의 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지 검토

> 수탁·대행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일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음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 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 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 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 (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사례 01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40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무역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문제점

-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할 기관에 대한 법률상 위탁 근거 부재
  - 행정기관의 권한을 민간에게 위탁하려면 법률상 위탁 근거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위탁 대행의 투명성이 저해됨
  - 평가대상 조문의 취지가 위탁(수탁자가 그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뢰 등으로 수정 필요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2024)

6. 권한의 위임·위탁(488P)

•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는 법률로 정해지는데,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게 되면 헌법상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위임·위탁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법령상 근거 없는 위탁 규정을 삭제하거나, 위탁을 의뢰 등으로 변경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8. 27.] [대통령령 제34854호, 2024. 8. 27., 일부개정]

제40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통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례 0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3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등록 취소 및 관리·감독

4. (생 략)

5. 법 제13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등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5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위한 처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5의3.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결과의 할당대상업체 통지 및 배출권등록부 등록

5의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할동 중 제53조제1항제7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활동

6. (생 략)

④ (생 략)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현황

-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의 법률상 권한 중 일부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문제점

-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의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행위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어 있으므로, 해당 권한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저하 우려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한정하여 업무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2. 7.] [대통령령 제35245호, 2025. 2. 7., 일부개정]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3의2.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한 사전 검토

3의3. ~ 6. (생 략)

④ (생 략)

사례 03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11.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
2. 법 제18조에 따른 협회
3.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예측가능성

현황

- 제정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기관 등 관련 사항 규정

관련 법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3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문제점

-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구체성 미흡

- 가상융합진흥법 제33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제정안에선 수탁기관에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수탁기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됨에 따라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결여될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그 밖에 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데 있어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규정(고시 등)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53호, 2024. 8. 27., 제정]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
2. 협회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3) 재정누수 가능성

개 요

-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 평가

- 재정지원 대상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평가방법

-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요건, 절차 등 검토
  - 평가 대상 조문에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규정과 부합하는지 검토
  - 재정지원 근거, 목적,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다른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다른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지원수준이 적절한지 검토

-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 재정지원 결정주체, 결정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 범위, 신청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대상 선정기준이나 그 절차 등이 공개되어 재정지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

-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및 책임성 확보 수단 검토
  - 보고의무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확인 수단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 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달성 확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신청 등이 위법한 경우, 지원 취소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환수 규정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 제도와 비교할 때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 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목적 외 사용 등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 또는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등)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사례 01 군 장려금 지급규칙

평가대상 조문

[별표]

반납액 산정기준

1. 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반납액(원)} = \text{지급된 장려금} \times \frac{\text{의무복무개월수} - \text{복무개월수}}{\text{의무복무개월수}}$$

2. 제1호의 의무복무개월수 및 복무개월수를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예측가능성

현황

- 단기복무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임관 전 및 임관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단기복무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별표 신설)

관련 법령 군 장려금 지급 규칙(안)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군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납 대상자 본인 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반납을 면제한다.

1. 임관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학적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나. 본인이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
   다.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임관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한함)
   나.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
   다. 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문제점

- 행정절차 관리 규정 미흡으로 재정누수 가능성 및 예측가능성 저하
  - 안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군 장려금 반납 대상 기준을 제1호 임관 전 및 제2호 임관 후로 반납 사유 및 시기를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별표를 신설하여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러나, 별표의 반납액 산정기준에는 임관 후로 추측되는 반납액 산정기준만을 제시하였고, 임관 전은 별도로 반납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반납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별표의 기준만으로는 반납 대상여부 및 반납 산정금액 등 행정처리 결과 예측이 어려움
  - 또한, 군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써 철저히 집행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장려금 반납 관리 규정 미흡으로 재정누수의 가능성도 우려되어,
  - 별표 제1호에 가목으로 임관 전 해당자를 명시하여 기준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별표 제2호의 내용도 제1호나목의 “의무복무기간에 실제 복무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관리되어야 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안 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반납액 산정기준 규정 개정취지를 바탕으로 제1호 임관 전과 제2호 임관 후 기준을 반영하여 명확하게 구체화 할 것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시행 2024. 12. 31.] [국방부령 제1164호, 2024. 12. 31., 일부개정]

[별표]

반납액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반납액
1. 임관 전에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	지급된 군 장려금 전액
2. 임관 후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기 전에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	지급된 군 장려금 × (의무복무기간의 개월수 −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개월수) / 의무복무개월수

비고 : 제2호의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개월수”를 계산하는 경우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3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개 요

- 정책결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참여제도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평가

- 의견진술 제도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절차에 참여·접근이 가능한지,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하위법규에 시행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판단)

평가방법

-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참여제도의 실효성 검토
  - 참여제도에 이해당사자, 일반국민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참여 기회는 충분한지,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

- 참여제도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참여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 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례 01 어선법

평가대상 조문

제26조의4(어선건조업의 등록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건조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
2. 제2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6조의3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 제23조를 위반한 경우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어선건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평가기준

- 접근의 용이성

현황

- 어선건조업을 등록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제점

- 어선건조업의 등록취소는 행정청이 부여한 자격, 권한 등을 박탈하여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처분당사자의 등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청문 절차 마련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어선건조업의 등록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근거 규정 마련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어선법

[시행 2025. 12. 21.] [법률 제20601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3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의 취소

1의2. 제10조에 따른 건조·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2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3.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4. 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2) 공개성

개 요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 판단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 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도 포함

평가방법

- 정보제공 관련 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정 검토
  -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 정보제공 관련 규정 실효성 검토
  -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국민이 공개된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검토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례 0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7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1. ~ 4. (생 략)

②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5.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
2. 업무수행능력
3. 설립목적 또는 활동영역의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과의 관련 여부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신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 ⑦ (생 략)

평가기준

- 공개성

현황

- 개정안은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관련 법령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1조의2(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산림청장은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전문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생 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지원기관 지정 현황에 대한 공개규정 미흡

- 지원기관 지정은 효율적인 국제농업·산림협력 사업 추진에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이해관계자 등이 해당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나,
- 해당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에 대한 접근 용이성 저하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지원기관 지정 현황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6호, 2024. 10. 25., 일부개정]

제5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 기관에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⑤ ~ ⑥ (생 략)

사례 0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1조(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① 법 제50조제2항의 유전질환(이하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유전질환"을 말한다)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발병 나이
2. 사망 시기
3. 질병의 중증도
4. 치료 가능성
5. 삶의 질
6. 그 밖에 질환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유전질환이란 별표 3의 질환을 말하며, 그 밖에 별표 3의 질환과 그 예후 등이 같은 수준의 유전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질환의 경우에도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으로 본다.

관련 법령 생명윤리법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평가기준

- 공개성

현황

- 개정안은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추가하는 데 시간 소요를 줄이기 위하여 질환명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시에서 공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문제점

- 유전질환에 대한 공고장소 등 부재
  - 그 밖에 별표 3의 질환과 그 예후 등이 같은 수준의 유전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질환의 경우에도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으로 본다고 하였으나,
  - 관련 정보를 그 어디에 공고한다는 내용이 없어 수요자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질환의 특성 및 유형, 예후 등을 어디에 공고하는지 수요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개선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23.] [대통령령 제34747호, 2024. 7. 23., 일부개정]

[별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제21조 관련)

1. ~ 62. (생 략)

63. 그 밖에 질환의 예후(豫後) 등이 제1호부터 제62호까지의 질환과 같은 수준의 유전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질환

사례 03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전담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 ④ (생 략)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평가기준

- 공개성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관련 규정 마련

문제점

-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공개 규정 미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와는 달리 지정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에 대한 접근 용이성 저하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전담기관 지정 시 홈페이지 게시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53호, 2024. 8. 27., 제정]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사례 0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평가기준

- 공개성

현황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과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47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함

문제점

- 수탁기관·사무의 내용에 대한 공개 규정 부재로 공개성 저하 우려
  - 개정안과 같이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의 내용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어,
  - 수탁기관 선정 등 행정업무 투명성이 미흡하여 관련 부패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참고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2024)

개별 법률에서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민편의를 위해 미리 수탁기관과 합의를 하여 각 개별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위탁한다”로 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한다. 다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법인·단체 중에서 전문성을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가 결정된 경우에는 국민이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수탁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드시 두도록 한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시행령에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할 경우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의 내용을 고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5호, 2025. 2. 11., 일부개정]

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 ⑤ (생 략)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⑦ ~ ⑧ (생 략)

(3) 예측 가능성

개 요

-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한지,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

- 이해관계자 등이 자격기준 및 필요한 제출서류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고,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불투명한 결과에 대비하기 위한 부패행위를 예방

평가방법

- 행정절차 관련 규정의 구체성 검토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업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행정절차 관련 규정 이해의 용이성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예측가능성 판단
  - 모호한 기준 중의적·다의적 표현 등으로 행정청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재량을 행사하거나, 민원인이 처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 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사례 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생 략)

②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 20. (생 략)

21.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현황

- 안 제200조의3 제2항은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매매 또는 거래에 대한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의 세부 유형을 정하는 것으로
  - 상속, 주식배당,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를 통한 주식의 취득이나 처분,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매매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계획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특정증권등'이란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2. 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1, 2 증권의 교환사채권, 4. 1~3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172조제1항)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상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9조에서 "거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거래계획"이라 한다)을 그 거래기간의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획의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 략)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 ④ (생 략)

⑤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3에 따라 거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만분의 2(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거래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때
2. 제17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한 때
3. ~ 5. (생 략)

문제점

- 거래계획 보고 제외사유의 예측가능성 미흡
  - 임원 등이 특정증권등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계획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 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거래를 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바 보고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 중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만 정하고 있고,

- 이를 판단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개별 매매나 거래가 보고 제외대상인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거래계획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하위법령에 위임 또는 고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71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생 략)

②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상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말한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

③ ~ ⑧ (생 략)

사례 0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8조의4조(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 및 각 기준별 세부내용과 가중치 등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생 략)

④ 연구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법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현황

-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운영을 위한 타당성조사 기준, 실시기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관련 법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적·재정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구회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타당성조사의 기준, 절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부재
  - 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타당성조사의 기준, 절차·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시행령에선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여 법률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저해 및 집행기관의 재량권 남용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법률의 위임에 따른 타당성조사 관련 규정 구체화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48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8조의4(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간은 7개월 이내로 하되, 대상사업의 성격 및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3. 비용·편익 분석 등 재정적 타당성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사례 0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라.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법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4호	가) 주류제조업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500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1,000
		(4)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2,000
		나)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소매업자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500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0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현황

「주류면허법」 제37조의2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금품 제공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 별표4 제2호에 라목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법 제38조제1항제4호로 명시하고, 가목의 1)(법 제17조에 따른 보전명령을 위반한 경우) 아)와 자)를 각 각 라목의 가)와 나)로 하여
- 주류제조업자, 주류판매업자 등이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

관련 법령 주류면허법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② (생 략)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 ⑧ (생 략)

문제점

- 별표 4 제2호라목의 세부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하여 예측가능성 저하
  - 법 제37조의2 및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나 주류 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금품 제공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 개정령안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위반행위를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금품 제공 등의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명령 등 별도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바
  -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위반행위에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또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

개선결과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5호, 2025. 2. 11., 일부개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라.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법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4호	1) 주류제조업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
		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인 경우	500
		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1,000
		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2,000
		2)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소매업자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
		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인 경우	500
		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0

사례 0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96조의3(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공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수술 또는 침습적 시술을 요하는 경우
2. 항공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장애가 동반된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다만, 단순처치 등 20일 이내의 단기 치료만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항공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 및 부상의 치료목적으로 입원을 요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⑧ (생 략)

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항공업무 등에 종사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재량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개정령안은 법 개정(항공종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에 따라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태 저하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신고 등의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을 정하기 위한 것임

문제점

- 신체적·정신적 상태 저하가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성·명확성 결여
  - 동법 및 개정령안에 따르면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개정안에서 정하는 각 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자격에 대한 효력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함
  - 이는 항공종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침익적인 행정처분의 사유도 되는바 신고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
  - 개정령안의 경우 '항공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 등으로 인한 수술 또는 시술', '항공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장애'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
  -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 개별 신체적·정신적 상태 저하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부재하여 항공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저해가 우려
  - 행정청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신고 대상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등 과도한 재량에 따른 부패발생 가능성이 존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당해 조문 또는 하위법령(부령, 고시 등) 등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14.] [국토교통부령 제1405호, 2024. 11. 13., 일부개정]

제96조의3(신체적·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란 항공업무(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항공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부상 등이 발생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별표 9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술 또는 침습적(侵襲的) 시술이 필요한 경우
2. 21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입원이 필요한 경우

② ~ ⑦ (생 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05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4.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현황

- 개정안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관련 법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전담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 부재
  - 개정안은 지정요건 중 일부를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으로만 규정하여,
  - 전담조직 구성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수 및 자격기준 등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최소한의 기준이 부재하므로,
  -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 및 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 침해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전담조직 관련 세부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79호, 2024. 9. 10., 제정]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일 것
2.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
3.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4. 전통문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등의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갖출 것
5.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②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개 요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내용

-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 위원 및 임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제척·기피·회피, 해촉,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행위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 자격요건의 구체성, 연임제한 규정의 유무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규정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

●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이나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사례 01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0조(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 ①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과 부장 및 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실비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이해충돌가능성

현황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911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해촉 절차,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의 내용 및 경비지원, 장비의 무상대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제점

▸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과정 전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장치 미흡**

- 심의위원의 자격요건 등 구성·운영기준 미비
  - 위원 선정, 참여비율, 임기 등 심의 운영위원들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제도의 전문성·신뢰성 저하 우려

-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부정·불법행위 위원에 대한 해촉 등 참여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 특히,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포상,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과 부장 및 반장의 위촉 관한 사항과 재해보상금 결정 등은 심의 평가 시 고려되는 항목 중 심사위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매우 큼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에 대한 객관적 자격요건 및 구성·운영기준 마련

- 심사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 및 부정·불법 위원의 참여배제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마련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 3.] [해양수산부령 제711호, 2025. 1. 3., 제정]

제10조(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2.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위원
5. 법조인, 언론인 또는 시민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6.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양경찰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⑦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⑨ 해양경찰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心神)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4. 제8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사례 02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5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 ⑥ (생 략)

제7조(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⑤ (생 략)

⑥ 활동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 ⑫ (생 략)

현황

-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하여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6. 2. 21. 시행)됨에 따라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뢰탐지·제거의 대행 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뢰대응활동위원회 및 지뢰활동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구 분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지뢰대응실무위원회
설치·목적·기능	**[법 제9조제1항]**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토지개방지역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9조제9항]** ⑨ 활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구성 및 임기	**[법 제9조제2항 ~ 제6항 및 영 제5조제3항]** ② 활동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활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활동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영 제7조제1항 ~ 제5항]** ①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시·도의 과장급 공무원 3. 합동참모본부·각 군에서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령급 장교 4.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국방부·군 전문가(제1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민간 전문가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구 분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지뢰대응실무위원회
위원회소집·의결정족수	**[법 제9조제7항 및 영 제5조제2항 ~ 제8항]** ⑦ 활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지뢰대응활동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④ 활동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활동위원회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활동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활동위원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활동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영 제7조제7항 ~ 제12항]**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 실무위원회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개방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활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활동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의결한 내용을 활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이해충돌 방지장치	**[법 제9조제10항 및 영 제5조제4항]** ⑩ 제10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활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④ 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규정 미흡**	**[법 제9조제10항 및 영 제7조제6항]** ⑩ 제10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활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⑥ 활동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규정 미흡**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점

-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심의 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나,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

  -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미흡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 등이 의결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제척) 위원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기피)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 (회피) 제척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 ◈ 제척·기피·회피 관련 근거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 참고

  - (해촉) 제척대상인 위원이 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요건 추가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심의·의결에 구속력이 있는 지뢰대응활동위원회 및 지뢰대응실무위원회에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제척대상인 위원이 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규정 마련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65호, 2025. 2. 18., 제정]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활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활동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활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활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활동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⑥ (생 략)

⑦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활동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해촉"은 "해임 또는 해촉"으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임명·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⑧ (생 략)

사례 0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련 시·도지사가 되며, 협의회의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련 시·도의회 의장
2. 관련 시·도의 지방연구원 원장
3.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과학기술, 행정·재정, 환경,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관련 시·도별로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하고, 의장은 개최지의 시·도지사가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⑤ (생 략)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협의회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관련 법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둔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연임제한 규정 부재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위원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협의 등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등 부패행위 발생이 우려됨
- 해촉규정 부재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에 해촉규정이 없어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위원 등이 협의회에 참여하여 협의회 운영 등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연임제한 규정 마련
- 해촉규정 마련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599호, 2024. 6. 25., 제정]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개 요

-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평가

평가방법

- 관련 부패사례 검토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타기관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검토
-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의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패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장치 도입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사례 01 출입국관리법

평가대상 조문

제68조의4(구성) ① 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외국인보호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5(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량의 구체성·객관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현황

- 개정안은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호 일시해제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으로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보호위원회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 연장 및 일시해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가능)으로 정함

문제점

☑ 내·외부 위원 구성의 기준이 없어 심의·의결의 공정성·중립성 제고 필요

- 외국인 보호에 관한 행정청의 기존 조치(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일시해제 등) 등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계속 필요한지 등에 대한 심의를 내·외부 구분 없이 구성된 위원이 하도록 규정된바,
- 내부위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 심의·의결에 있어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논란 발생 가능

☑ 위원의 자격 기준이 불명확으로 자의적 구성 가능

- 위원의 자격 일부를 '그 밖에 외국인보호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없는바
- 임명권자가 자의적으로 위원을 위촉하여 상황에 따라 임명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 존재

☑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부재

- 행정기관위원회법상 당연직,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보호위원회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 등이 필요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특정 위원이 장기 연임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청탁 등의 부패행위가 유발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바 위원의 임기(연임)는 제한하는 것이 타당

참고

행정기관위원회법 제8조 제2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해당 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보호위원회 구성 등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 위원회 구성 시 내·외부위원 수 안분
  - 위원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보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횟수를 당해 규정 또는 하위법령 등에 명시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794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66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 소속이 아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보호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 ⑤ (생 략)

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상임위원 및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개 요

- 급변하는 행정환경으로 인해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법령 등에 내재하는 소극행정 유발 요인을 이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 법령상 근거 부재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적극행정 운용규정」 제2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

평가방법

- 법령상 근거 부재로 인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검토
  - 평가대상 법령의 상·하위 법령을 검토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음에도 하위 법령에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등 법령상 근거 부재 인해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업무해태, 자신 또는 소속기관만을 위한 자의적인 업무처리 등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소극행정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도입 검토
  - 처리기한 규정, 민간 전문가 참여기회 확대 등 공무원의 업무해태 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의 반복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억제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또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상의 근거 부재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등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가?	
□ 불명확하게 규정된 법령상 각종 요건 등으로 인해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가?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처리하는 등의 행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자신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또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례 0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1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평가기준

-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재량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법 제21조제7항은 단서에서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의결로써 사회보장위원회(본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시행령 개정령안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위원회[2] 의결로써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3]에 제3호와 제4호로써 다음의 두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현행) **시행령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②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는 사항

②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 소관 부처(서) 확인 결과, 현재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계획은 없음

문제점

- 신설되는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실무위원회 의결로써 본위원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경우로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위원장 의사만으로 의결 없이 위원회 전체 의사를 대신할 수 없음
  - 본래는 본 위원회 의결이 원칙임에도 그 사안이 "경미" 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 의결없이) 실무위원회 의결로 갈음하는 사항을 판단할 때, 그 "경미함" 여부를 위원장이 단독으로 정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등에 의해 본 위원회 기능을 형해화시킬 수 있고(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또한,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규정이 운용될 경우, 실무위원회 의결로 갈음하는 "경미함"의 판단 논리 부재로, 본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도 위원장이 위임하기만 하면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들어 실무위원회 의결이 빈번해질 가능성 존재(소극행정 가능성)
  -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도, 실무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위원회와 구성원이 동일하지 않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간주하는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음

「법령입안·심사기준(2024)」 제2장 실체규정 23. 위원회

-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와는 달리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은 본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고, 그 기능 및 역할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연구·검토·조정 등으로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은 본 위원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본 위원회와 구성원이 다른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간주 하는 경우 본 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간주하는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22페이지 상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가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위원회가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을 하위규정(ex : 의결로써 정한 위원회규정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것.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1.] [대통령령 제33629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 ②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제7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⑧ (생 략)

사례 02 도서관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는 자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도서관자료(제16조에 따른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 또는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③ ~ ⑦ (생 략)

제21조(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제출) ① (생 략)

②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자료를 제출한 자는 해당 디지털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평가기준

-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공개성

현황 ※국립장애인도서관도 유사

- 개정안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 등의 보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도서관자료(도서 등) 발행 자는 납본 의무가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부자로부터 보상청구서를 받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
  -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온라인 자료 제공자로부터 보상청구서를 받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

관련 법령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도서관자료 등의 보상에 대한 사전 안내 규정 부재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자료 납본자 등으로부터 보상청구서를 받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 해당 절차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사전 안내 규정의 부재로 보상과 관련한 소극행정을 유발할 가능성 존재

- 「도서관법」상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당한 보상은 의무사항인바, 사전 안내를 통해 법률의 취지에 맞는 행정 집행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여 보상 절차를 몰라 피해 보는 사례를 예방하고, 소극행정 유발 요인 차단

개선권고 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2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5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받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본서를 제출한 자나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 ⑧ (생 략)

제21조(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① ~ ② (생 략)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발급하고,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파일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Part

Ⅲ

참고 자료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3. 관련 법령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1 준수 <수요 측면>

01 준수부담의 합리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02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03 특혜발생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 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2 집행 <공급 측면>

0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0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 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취소와 정지 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 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 (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03 재정누수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 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한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3 행정절차 <절차 측면>

01 접근의 용이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02 공개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03 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 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4 부패통제

01 이해충돌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0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0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부작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령상 근거 부재가 있는가?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합리한 법령상 근거 규정이 있는가?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늑장 대응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공무원의 행위 등에 있어서 소극적인 해석을 유도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을 저해하는 규정이 있는가?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0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1)]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기준·절차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처리기간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합리적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측가능성)	
신청서류 등	□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 (예측가능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1)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정보공개	□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관리·감독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의제	□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이해관계인 의견청취·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인·허가 의제 효과의 인정과정에서 특혜 우려가 있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02 부과·징수 업무[2)]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절차	□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부과(예.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경우 제재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부과·징수 절차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 (예측가능성)	
가중·감면	□ 행정처분 등의 가중·감면 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처분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혜발생가능성) – 가중·감면의 적용방식(비율산정, 적용순서 등),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가 적정한지 검토	

2) 인·허가 등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 과태료의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징수 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됨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이의제기	□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환급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지급대상(과오납금의 양도)·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체납처분	□ 압류, 공매, 환가처분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대상선정, 조사방식, 절차 등의 규정이 구체적인지 검토	

03 보조·지원 업무[3)]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	□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 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대상선정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지원 적정성	□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재정누수 가능성)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이 필요한가? (재정누수 가능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 (공개성)	
관리·감독	□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제재	□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 – 처벌규정(벌칙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환수, 수혜자격 배제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4)]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3) 보조·출자·출연·융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04 위탁·대행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절차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기준·요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대행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위탁	□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지원	□ 수탁·대행업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재정누수 가능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위탁·대행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 위탁·대행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관리·감독	□ 위탁·대행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자료제출·보고 의무, 조사·감독 권한, 시정명령권	
	□ 수탁·대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감독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재	□ 수탁·대행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공무원 의제 등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기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수탁·대행업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05 행정조사 업무[5)]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절차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6)]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조사대상 범위, 조사기간, 기간 연장 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5)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나, 단순 실태조사 등 명령이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 외에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도 있음

6)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세무조사나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제3조제2항)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 전 사전통보 규정을 두고 있는가?[7] (공개성) – 사전통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가 타당한가?	
제재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감사·감찰기능 등	

7)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06 단속·점검 업무[8)]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절차	□ 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 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 전 사전통보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 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성의 용이성)	
정보공개	□ 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8)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부담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나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지도의 경우는 본 체크리스트 활용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재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단속·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감사·감찰기능 등	

〈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0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구성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 조항 확인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 위원 구성 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이해충돌 가능성)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 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 (이해충돌가능성)	
임기 및 신분	□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척·기피·회피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제재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이의제기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공개성)	
	□ 위원 위촉과정 및 위원회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08 인사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인사기준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인사 위원회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 시 (이해충돌가능성)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임용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공개성)	
기관장 재량	□ 임용·승진·평가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가점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이의제기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 (공개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 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규정 확인	
기타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3 관련 법령

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 률	시 행 령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법 률	시행령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⑨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02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3호
개정 2010. 4. 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34호
개정 2011. 10. 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45호
개정 2012. 10. 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53호
개정 2013. 6. 1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58호
개정 2015. 1. 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72호
개정 2015. 3. 3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75호
개정 2015. 11. 1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90호
개정 2019. 10. 8.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181호
개정 2020. 5. 1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211호
개정 2020. 9. 1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231호
개정 2020. 11. 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239호
개정 2022. 4. 29.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274호
개정 2023. 4. 1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30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안동의 :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2.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3.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법령안"이라 한다)
2.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훈령·예규·고시·공고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포함한다)와 조례·규칙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자치법규안"이라 한다)
4.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제정이나 개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부규정(이하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2(평가대상 제외법령 등) ① 제·개정 법령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이하 "제외법령"이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헌법기관이 행하는 사항에 대한 법령
2. 국가보안, 예비군·민방위, 국토·통일, 국호·국기·연호, 전례·국경일 등 국가의 안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
3.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령
4.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령
5. 그 밖에 고도의 정책추진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령

② 위원회는 제외법령의 시의성 제고 및 정책 환경 변화 등 제외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외법령을 지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제외법령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위원회는 제외법령에 대한 평가의뢰를 받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임을 평가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2장 부패영향평가 처리 절차

제1절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5조(법령안 및 기초자료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개정 법령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개정 법령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이하 "세부자료"라 한다)까지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처전담제 실시) ①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담당자별로 각 소관기관을 전담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 문서수신 담당자는 업무 분장에 따라 지정된 평가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세부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기관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제·개정 법령안 및 기초자료·세부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분석 시 평가 대상 법령의 상위 근거 법령, 평가 대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행정규칙·조례 등 하위 법령 및 관련·유사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다.

제8조(평가 기한)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소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부터 4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문 의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① 평가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소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선권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자는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요 사항"이라 한다)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제10조(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①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이 중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받는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 전체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거친다.

④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⑤ 평가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⑥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⑦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소관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과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

③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④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친다.

제1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 ①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연 1회 이상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대한 소관 기관의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 조치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소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중요사항인 경우 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야 한다.
1. 개선권고를 통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2. 개선권고 내용이 법제처 법령안 심사, 국회 법률안 심사 등 입법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된 경우
3. 소관기관이 법령 제·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4. 다른 법령의 입법을 통해 개선권고 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3조(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내부규정(이하 "현행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령등의 소관 기관(이하 "소관 기관"이라 한다)에 현행 법령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소관 기관이 작성·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접수하여 관리한다.
④ 위원회는 각 기관이 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토대로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등에 대한 기초자료·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의2(현행 법령등 부패영향평가) 위원회는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과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3. 국가시책으로 중점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4.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당해 또는 관련 현행 법령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등) 현행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의 보완·평가서 작성 및 자문 의뢰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자료 제출요구·실태조사 등) ① 평가담당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에 업무편람,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를 한 후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소관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평가담당자는 법령운용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개선권고안 보고 및 위원회 의결) ①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안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소관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면 그 결과 등을 반영한 개선권고안을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다. 다만 제13조의2제4호에 해당하여 제·개정 법령안과 함께 현행법령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8조(개선권고 통보 및 재평가 등) ① 평가담당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선권고를 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재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후관리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보고를 거쳐 종결할 수 있다.

제3절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9조(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절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20조(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행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17조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부패영향평가 자문

제21조(자문기구의 구성) ① 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1. 대학·연구기관·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2.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기술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패방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자문 의뢰) ① 평가담당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자문기구에 속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자문 방식) ① 평가담당자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자문요청서에 따른다.

② 평가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요사항에 관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자문 수당) 평가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통보한 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문서·자료 및 역량 관리

제26조(문서 관리)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관련 문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접수년도 및 일련번호 등을 구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 문서가 접수된 때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생산되는 일련의 평가관련 문서 및 자료 등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7조(부패실태자료 수집·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공직자 종합자료통계 및 위원회 신고심사 실적 등 부패실태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28조(부패영향평가 관련 정보 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에 관련된 접수내용, 자문현황, 평가결과 등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8조의2(부패영향평가 역량 관리) ① 위원회는 평가담당자의 평가기법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유발요인 발굴과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부칙 생략

2024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4

발 행 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부패영향분석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

전 화 | 044-200-7654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권익위원회의 허락 없이 본 책자를 영리 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합니다.